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수지초등학교

학교폭력 개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학교폭력 유형 및 예시상황



신체 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언어 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학교폭력 유형 및 예시상황



강요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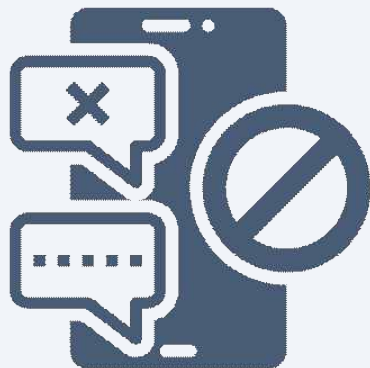
집단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성행위, 유사 성행위 / 신체적 접촉
성적인 말과 행동 /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반포,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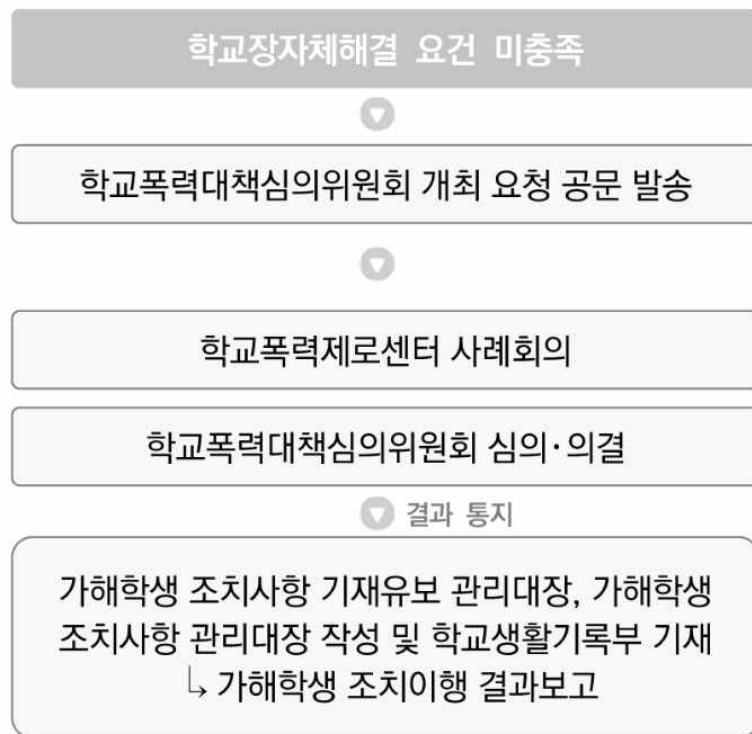


- ✓ 사이버 언어폭력 · 명예 훼손 · 갈취 · 스토킹 ·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 친구에 대한 모욕적 언사나 욕설, 저격글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행위
- ✓ 친구에 대한 허위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거나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단계	학교에서 해야 할 일	비고
학교폭력 인지	117 신고센터, 교사·학생·보호자를 통한 인지 및 신고접수	
학교폭력 접수 및 사실 확인	- 접수 / 초기대응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 작성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에게 통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 관련학생의 소속교가 다른 경우, 먼저 인지한 학교에서 상대학교에 통보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긴급조치 필수 - 사안접수 보고서 교육지원청 보고(48시간 이내)	
즉시조치 (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 관련학생·신고 및 고발학생 안전 조치 - 성범죄인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 연계 - 심의위원회 이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긴급조치 실시 가능(피해학생 제1호, 2호, 3호, 6호 조치), (가해학생 1호, 3호, 5호, 6호, 7호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청취 필수(거부하여도 조치 실시 가능)
사안조사 (조사관 또는 전담기구)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 조사 실시 -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 확인 및 안내 - 추가로 발견된 피해 사실 및 쟁점에 대해 피·가해학생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요청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법률 13조의2제1항 제1호~4호에 모두 해당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 전담기구 심의 결과보고서 작성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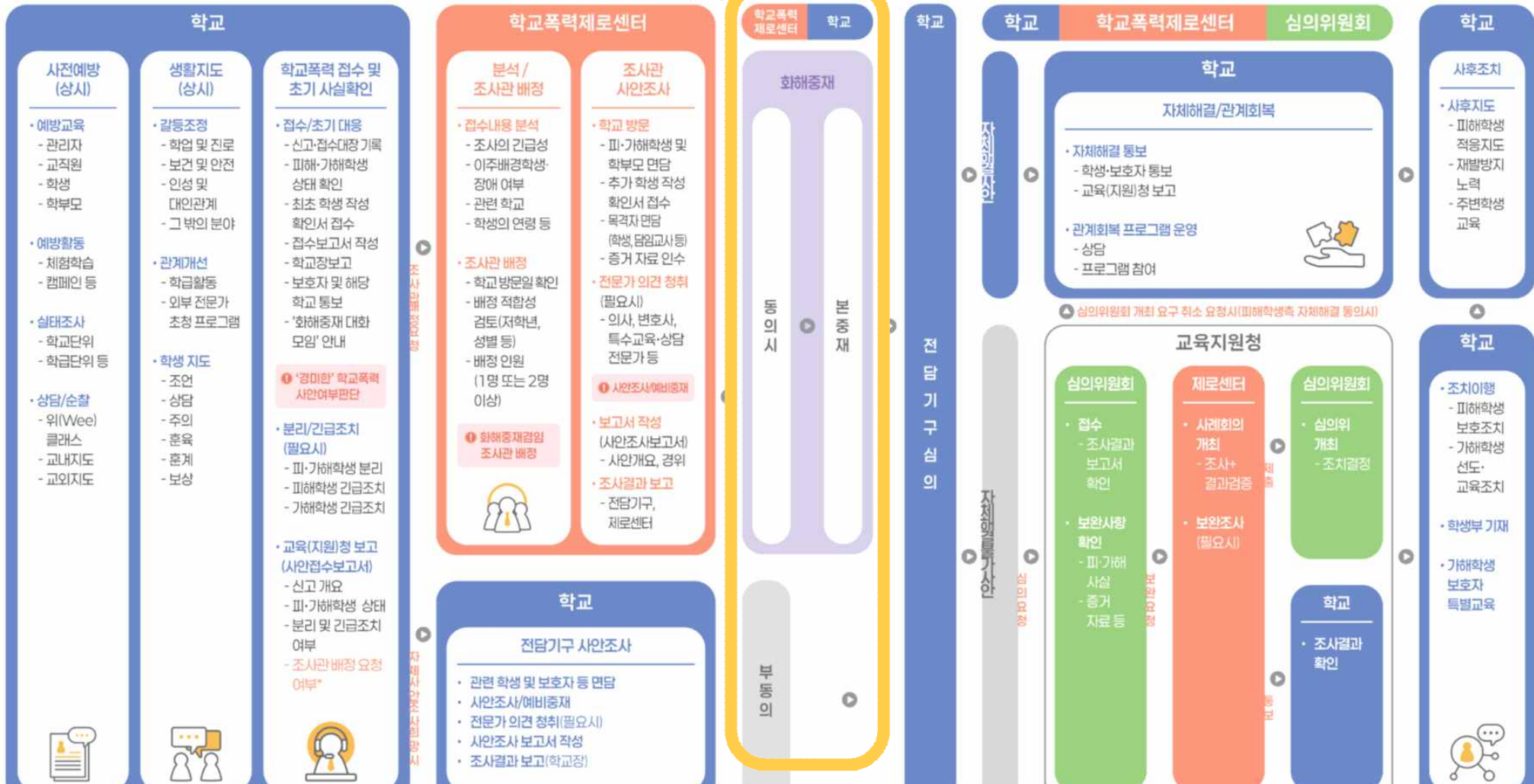
▶
미동의



※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화해중재(관계회복프로그램) 안내

• 기타 다른 학교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 간 공문 발송 및 회신 필요

경기형 사안처리 흐름도 (경미한 사안 시)



경기형 사안처리 흐름도 (경미하지 않은 사안 시)



사안처리 시 유의 사항

-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 형성
-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음.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 활용
-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 사용
- 성범죄 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